

#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## 결 정

2014 의결 제14호(2014. 7. 14.)

제목 :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고지서 서식 개선 권고

## 주 문

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, 제18호, 제20호, 제21호 및 제22호의 각 지방세 고지서 서식을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권고한다.

## 이 유

### 1. 배 경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기 위해 납세고지서, 체납처분비고지서, 독촉장, 납부최고서 또는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. 이 각종 고지서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, 제18호, 제20호, 제21호 및 제22호 각 서식(이하 '지방세 고지서 서식'이라 한다)에 의한 것으로, 고지서를 보내고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외부 면에 각종 고지서의 명칭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고지서의 외부 면에 '독촉', '납부최고', '체납세액고지' 등 고지의 내용을 함께 표시하여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송달하고 있다.

## 2. 판 단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에 ““개인정보”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다.

지방세 고지서 서식에 따라 우편물 외부 면에 기재된 각종 고지서의 명칭은 동일한 면에 기재된 성명, 주소와 결합되어 식별 가능한 특정 개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.

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 고지서는 “교부·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”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.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서는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의 경우 교부·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, 30만원 미만의 연례적 지방세의 경우 보통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함에 있어서 우편물 외부에 수신자의 성명과 주소 외에 세금체납 사실 등 까지 표시하는 것은 우편 송달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처리라고 판단된다. 또한,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일반 우편물 전달과정을 고려할 때 우편물 외부에 표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진다.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세의 경우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

여 2010년 4월 8일 「국세징수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여 고지서 서식에서 ‘독촉장 재중’ 등의 문구를 삭제토록 한 바 있다.

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과 제6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“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”내에서 “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”처리되어야 한다.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지방세 고지서 송달 시 우편물 외부에 고지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우편물 송달 목적 범위를 벗어나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4. 7. 14.

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